

회 칩

제1장 총 칩

제 1 조 (명칭)

본 클럽은 에이치원클럽(이하 "클럽" 이라 칭함)이라 하며, 영문으로는 H1 CLUB 이라 표기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 클럽은 호반써밋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칭한다)가 소유, 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)

본 클럽의 사무소는 골프장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2장 회 원

제 4 조 (회원)

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.

- 1) 일반회원(개인 및 법인회원)
- 2) 골드회원(개인 및 법인회원)
- 3) VIP회원(개인 및 법인회원)
- 4) VVIP회원(개인 및 법인회원)
- 5) 가족회원/지정회원(개인 및 법인회원)
- 6) 기타회원

제 5 조 (일반회원)

일반회원은 내국인으로서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(기명식으로 1구좌 1명에 한한다)으로 구분한다.

제 6 조 (골드회원)

골드회원은 내국인으로서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(기명식으로 1구좌 1명에 한한다)으로 구분하며, 일반회원과는 달리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반 혜택을 받는다.

- 1) 월 4회(주말 및 공휴일, 회원의 날)예약을 보장 한다.
- 2) 입장요금은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요금제도에 따른다.
- 3) 예약은 예약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- 4) 개인지명인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인, 법인지명인은 법인이 지정한 1인으로 하며, 무기명 1인도 각각 회원 대우하여 준다.

제 7 조 (VIP회원)

VIP회원은 내국인으로서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 구분되며, 일반회원과 달리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반 혜택을 받는다.

- 1) 월 2회(주말 및 공휴일, 회원의 날)이상 예약을 보장한다.
- 2) 입장요금은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요금제도에 따른다.
- 3) 예약은 예약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VVIP회원)

VVIP회원은 내국인으로서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 구분되며, 일반회원과 달리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반 혜택을 받는다.

제 9 조 (외국인회원)

외국인 회원은 외국인으로서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.

제 10 조 (해외회원)

해외회원은 내국인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을 말한다.

제 11 조 (가족회원/지정회원)

가족회원/지정회원은 일반개인회원, 골드개인회원, VIP회원, VVIP회원 중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, 일반 법인회원, 골드법인회원, VIP법인회원, VVIP법인회원이 소속한 직원 중 지정한 1인을 말한다.

제 12 조 (기타회원)

기타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회원 대우자를 말한다.

제 13 조 (입회)

본 클럽의 입회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.

제 14 조 (입회금)

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 받아 5년간 거치하며 퇴회, 제명, 사망 (승계가 없는 경우), 법인해산등으로 퇴회 시 당 클럽의 회원권 양도. 양수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. 다만 천재지변, 불가항력 또는 기타 회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회사는 그러한 사유의 지속 기간 동안 입회금의 반환을 연장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입회자격의 제한)

- 1) 본 클럽의 회원권은 동일인이 2매 이상 중복 소유할 수 없다.
단, 일반회원, 골드회원, VIP회원, VVIP회원 중 법인은 제외한다.
- 2) 회원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모집 예정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타 골프장 회원권 다수 소유자부터 가입을 배제한 후 이사회에서 추천한다.
- 3) 미성년자(선수 양성의 경우 제외)의 입회는 금지 한다.
- 4) 회사는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입회금 납입 또는 회칙에서 미리 정한 자격 제한 해당 여부 등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의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.
- 5) 양도 및 탈퇴회원의 재 입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.

제 16 조 (시설이용 및 회비)

- 1) 회원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반면, 그 자격에 따라서 회사가 정하는 제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골프장의 제반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- 2) 본 클럽의 정회원이 회원 요금으로 예약 가능한 횟수는 회원권별 약정에 따르며, 횟수를 초과한 예약의 경우 별도 공지된 요금으로 적용한다.

제 17 조 (이용의 제한)

천재지변, 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, 전쟁, 파업, 전염병, 회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,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한 제한, 대회 또는 행사의 실시, 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자격의 제한)

회원이 다음 각항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의거 제명 또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게시한다. 단, 본 조에 따른 자격의 제한은 대상 행위가 골프장 이용질서, 골프장 운영 및 회원관리, 다른 회원들의 권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심각성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.

- 1)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 의무를 위반하는 등 클럽의 안정적 운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거나, 사회적 통념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
- 2) 관계법령 위반에 준하는 본 회칙 및 클럽의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
- 3) 성추행, 폭력 및 폭언, 고성방가, 상해, 질서문란, 명예훼손 등 그에 준하는 영업방해 행위 및 회사의 명예·신용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회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
- 4) 이용 요금 및 기타의 납입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
- 5) 특별한 이유 없이 연간 2회 이상 당사의 예약 및 위약안내를 위반하여 다른 회원들의 예약 기회를 박탈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의 예약을 진행하고 이를 취소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사로부터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
- 6) 본 클럽의 입회자격 또는 조건을 허위로 기술하여 입회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
- 7)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

제 19 조 (자격의 상실)

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.

- 1) 회원권의 양도
- 2) 퇴회
- 3) 제명
- 4) 사망
- 5)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또는 등록취소

제 20 조 (회원권의 양도)

제 20 조 (회원권의 양도)

- 1) 회원은 회원의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, 본 회칙에서 정한 회원권 양도·양수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가 규정한 명의개서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약정기간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제14조의 기간을 적용한다.
- 2) 회원권의 양도, 승계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.
- 3) 해외회원은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.
- 4) 외국인회원은 양도할 수 없다.
- 5) 회원권의 양도·양수 금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있다.

제 21 조 (회원권 양도 양수의 제한)

- 1) 회사는 회원 명의변경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명의개서나 등재자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.
 - ① 기존 양도인의 미납금이 확인된 경우
 - ② 본 회칙에서 규정한 회원 자격 요건에 문제가 발생하여 심의해야 하는 경우
 - ③ 관련 정부기관 혹은 수사기관의 요청
 - ④ 압류, 가압류 등 법원 등의 결정 등에 따른 양도양수 제한이 있는 경우

- ⑤ 본 회칙에서 정한 자격의 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
 - ⑥ 기존 회원에서 제18조(자격의 제한)에 따라 제명된 회원이 재가입하는 경우
 - ⑦ 기타 법령에 위반한 방법이나 목적으로 본 회원권을 양도·양수하려는 경우
- 2) 전항에 의한 행정관서의 양도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.

제 22 조 (퇴회)

- 1) 퇴회는 약정기간(입회일로부터 5년)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약정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2)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5년 이내에 퇴회를 요구할 수 없다. 단, "승인"이란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반환요건 해당 여부 등 절차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.
- 3) 회사는 퇴회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만을 반환한다.
- 4) 해외회원, 외국인회원의 회원권은 임의 양도 할 수 없으며,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회사에게만 양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.
- 5) 회사는 퇴회하는 회원에 대해 회원권의 거래질서 확립 등의 사유로 퇴회 후 5년간 회원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 23 조 (회원관리)

- 1) 회원 명부에는 회원증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(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해당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), 주소, 직장, 전화번호를 기재한다.
- 2) 회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클럽은 회원 변동사항을 관할시장에 보고 할 수 있다.

제 24 조 (회원의 권리)

- 1) 회원은 본 클럽의 제반시설을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 할 수 있다.
- 2) 회원은 클럽이 주최하는 제반경기 및 기타 사항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클럽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 25조 (신상변동사항 신고의무)

회원은 주소 기타 신상에 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본 클럽 홈페이지 또는 당 클럽 회원 관리부서에 즉시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

제 26 조 (이사회)

본 클럽회칙에서 "이사회"라 함은 호반씨및 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에 의한다.

제 27 조(운영위원회)

- 1)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2)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4 장 경 기 규 칙

제 28 조 (경기규칙)

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.

제 29 조 (로컬룰 및 임시 규칙)

본 클럽 로컬룰 제정, 개정, 경기규칙의 변동 및 임시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회사가 정한다.

제 30조 (관례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.

제 5 장 부 칙

제 1 조 (회칙의 개정)

본 회칙의 개정은 클럽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, 본 회칙의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.

제 2 조 (시행일)

1987년 7월 1일

제 3 조 (개정일)

- 1) 본 회칙은 1994년 6월 1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
- 2) 본 회칙은 2007년 9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- 3) 본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
- 4) 본 회칙은 2011년 7월 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- 5) 본 회칙은 2019년 4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- 6) 본 회칙은 2020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- 7)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
- 8) 본 회칙은 2023년 5월 2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.